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	제3000호

제출년월일 2022. 8. 18.
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❍ 본 안건은 2022년 08월 1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불부합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

❍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2.1.13.) 제정으로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청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불부합 인용 조항 정비
(안 제10조, 제13조제3항, 제14조)

❍ 주민조례발안 관련 조문 및 조항 삭제 (안 제1조, 제12조제2항, 제18조, 제19조)

4. 검토의견

❍ 본 안건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「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상의 관련 조문 및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불부합 인용 조항을 단순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(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중)